

서면브리핑	2015년 9월 24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[의결 안건]	
	가. 지상파방송정책과	고낙준 과 장(2110-1420)
	나. " "	" "
	[보고 안건]	
	가. 이용자정책총괄과	김용일 과 장(2110-1510)
	나. 개인정보보호윤리과	엄 열 과 장(2110-1520)

2015년 제51차 위원회 결과

[의결안건]

가.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위원회가 '15.2.6. 증자와 관련하여 부과한 시정명령*을 불이행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, 제19조제1항, 제109조,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,000만원을 부과함

* 증자 미이행금액(39.5억원)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,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

나.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

- '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, '14년 제작비를 311억원 이상 투자하며, 현금보유액을 '14년말부터 87억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함

< 시정명령 주요내용 >

- 증자 미이행금액(39.5억원)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,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
- '14년 제작투자비중 미이행 금액(8억원)을 '15년~'16년 제작투자비와 함께 '16년 말까지 집행하되, 미이행 금액을 '16년에 집행할 경우에는 제작비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(1.57%)에 해당되는 금액(1,200만원)을 가산하여 집행할 것
- '15년 말부터 적정 현금보유액은 현금보유액(87억원) 이상을 유지할 것

다. 방송사업자 재허가·승인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

- '15.4.29. 제18차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'방송사업자 재허가·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결과 재허가·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·의결함
- 심사사항 중 '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'과 '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·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'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티브이(TV)는 '조건부 재허가'를,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는 '조건부 재승인' 또는 '재승인 거부'를 할 수 있도록 함

[보고안건]

가. 「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'15.8.6. 발표한 「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(안)」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「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」 개정안을 보고함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('15.12.23. 시행)으로 개인정보의 제공, 취급위탁 관련 동의를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

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(1천만원 이하 →3천만원 이하)
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
「정보통신망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보고함. 끝.